

「대학혁신지원사업단 운영 및 관리 규정」 신구조문대비표

2019. 6. 10. 제정 판 (시행 2019. 4. 1.) → 2022. 3. 7. 개정 판 (시행 2022. 3. 1.)

바뀜 9 · 신설 2 · 삭제 0 · 번호 변경 0

공식 원본 law.syu.ac.kr · <https://suleap.syu.my/r/382/compare?from=915&to=1270> · 내려받은 때 2026. 10. 21. 오후 1:27:53 · 밑줄은 바뀐 부분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조직)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조직 설치 및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 1. 사업추진위원회 2. 대학혁신지원사업단 3. 사업자체평가위원회 4. 사업비 중앙관리 조직	제3조(조직)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조직 설치 및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 <u>〈개정 2022-03-07〉</u> 1. 대학혁신위원회 2. 대학혁신운영위원회 3. 대학혁신지원사업단 4. 자체평가소위원회
제4조(사업추진위원회) ① 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추진위원회를 둔다. ② 사업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며,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, 그 외 위원은 교무위원급 인사와 외부전문가 1인 이상으로 구성한다. ③ 사업추진위원회에는 간사 1인과 필요에 따라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. ④ 사업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. 1. 대학 발전목표와 연계한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2. 사업 운영 관련 규정 제정 및 개정 승인에 관한 사항 3. 사업비 배정 및 집행 승인에 관한 사항 4. 사업성과 지표 설정 승인에 관한 사항 5. 사업추진상황 및 결과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. 사업비 집행에 있어 타재정지원사업과의 중복성 관리에 관한 사항 7.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	제4조(대학혁신위원회) ① 대학의 재정지원사업(중앙정부, 지자체) 운영의 총괄적 점검 및 자율혁신계획 상 특성화 방향에 기반한 투자 계획 수립에 대해 관리 감독 하는 기관으로 대학혁신위원회를 둔다. ② 대학혁신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며, 위원은 교무위원급 인사와 주요 재정지원사업 책임자 및 재학생(1인 이상)으로 구성한다. ③ 대학혁신위원회는 간사 1인과 필요에 따라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. ④ 대학혁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. 1. 재정지원사업(중앙정부, 지자체) 운영의 총괄적 점검에 관한 사항 2. 자율혁신계획 상 특성화 방향에 기반한 투자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. 대학 내 전체 재정지원사업 성과에 대한 총괄적 평가·환류 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. 대학 내 전체 재정지원사업의 투명성 <u>및 공공장화를 위한 회계 모니터링 실시</u>에 관한 사항 5. 대학 내 전체 재정지원사업의 운영 현황·성과에 대한 총괄적 평가에 관한 사항 6. 대학 내 전체 재정지원사업 간 자원 배분의 적절성 및 개선 계획 수립 <u>및 운영</u>에 관한 사항 <u>〈전면개정 2022-03-07〉</u>
<신 설>	제4조의2(대학혁신운영위원회) ① 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학혁신운영위원회를 둔다. ② 대학혁신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며,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, 그 외 위원은 교무위원급 인사와 외부전문가(1인), 재학생(1인 이상)으로 구성한다. ③ 대학혁신운영위원회에는 간사 1인과 필요에 따라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. ④ 대학혁신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. 1. 대학 발전계획과 연계한 자율혁신계획 수립 및 변경 승인에

현행	개정안
	관한 사항 2. 사업 운영 관련 규정 ~~및~~ 세부집행지침 ~~제정~~ 및 개정 승인에 관한 사항 3. 사업비 배정 및 집행 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4. 성과지표 설정 ~~및~~ 승 ~~인~~ 관리에 관한 사항 5. 사업추진상황 및 결과의 점검 ~~및~~ 평가 ~~받은~~ 사항 6.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〈신설 2022-03-07〉
제5조(대학혁신지원사업단) ① 사업실무를 총괄하는 사업전담조직인 대학혁신지원사업단(이하 “사업단”이라 한다)을 둔다. ② 사업단은 단장, 팀장, 팀원으로 구성하며, 별도의 연구원을 둘 수 있다. ③ 사업단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<u>사업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며, 위원</u>은 사업군별 실행부서의 행정직원으로 구성한다. ④ 사업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. 1. 사업추진방향 설정 2. 사업군별 세부사업 계획 점검, 자문 및 관련 컨설팅 3. 사업 결과보고서 작성 및 차년도 사업 계획 수립 4. 핵심 및 자율 성과지표 등 성과(실적) 상시 모니터링 및 피드백 5. 사업성과 공시 및 홍보 6. 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	제5조(대학혁신지원사업단) ① 사업실무를 총괄하는 사업전담조직인 대학혁신지원사업단(이하 “사업단”이라 한다)을 둔다. ② 사업단은 단장, 팀장, 팀원으로 구성하며, 별도의 <u>전담교원 및 연구원</u>을 둘 수 있다. 〈개정 2022-03-07〉 ③ 사업단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<u>대학혁신 운영위원회</u>를 구성하여 운영한다. 〈개정 2022-03-07〉 ④ 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. 〈개정 2022-03-07〉 1. 사업 추진 계획 수립 2. 세부 사업별 운영 점검 및 상시 모니터링 3. 사업 결과보고서 작성 4. 핵심 및 자율 성과지표 등 성과(실적) 상시 모니터링 및 피드백 5. 사업성과 <u>확산</u> 및 홍보 6. 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
제6조(사업자체평가위원회) ① 사업 추진 점검 및 개선계획 수립을 위한 자체평가위원회를 둔다. ② 자체평가위원회는 내 ~~부~~ 외 ~~부~~문가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한다. ③ 자체평가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정해진 기간에 정기적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 ④ 이 외에 사업의 추가 점검이 필요할 때에는 사업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 ⑤ 자체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. 1. 사업비 집행에 대한 정기 점검 2. 성과지표 실적에 대한 정기 점검 3. 사업추진 결과에 대한 자체평가 4. 자체평가 결과에 따른 환류 및 개선계획 수립	제6조(자체평가소위원회) ① 사업 추진 점검 및 개선계획 수립을 위한 자체평가소 위원회를 둔다. ② 자체평가소위원회는 내 ~~부~~ 외 ~~부~~문가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한다. 〈개정 2022-03-07〉 ③ 자체평가소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정해진 기간에 정기적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 ④ 이 외에 사업의 추가 점검이 필요할 때에는 <u>대학혁신운영 위원회</u>의 승인을 받아 자체평가소위원회에서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 ⑤ 자체평가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. 1. 사업비 집행에 대한 정기 점검 2. <u>사업성과 및 자율성과지표</u> 실적에 대한 정기 점검 3. 사업추진 결과에 대한 자체평가 4. 자체평가 결과에 따른 환류 및 개선계획 수립 〈전면개정 2022-03-07〉
제7조(사업비 중앙관리 조직) ① 사업비 중앙관리 조직은 총괄책임자, 실무책임자 및 약간 명의 행정직원으로 구성한다. ② 사업비 총괄책임자는 기획처장으로 하고, 실무책임자는 <u>예산</u>팀장을 당연직으로 하며, 실무자는 관련부서의 행정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. ③ 총괄책임자의 부재 시 실무책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 ④	제7조(사업비 중앙관리 조직) ① 사업비 중앙관리 조직은 총괄책임자, 실무책임자 및 약간 명의 행정직원으로 구성한다. ② 사업비 총괄책임자는 기획처장으로 하고, 실무책임자는 <u>사업운영</u>팀장을 당연직으로 하며, 실무자는 관련부서의 행정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. 〈개정 2022-03-07〉

현 행	개 정 안
사업비 중앙관리 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. 1. 사업비 집행계획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수립 2. 사업비 집행의 통제 및 관리 3. 연차별 사업비 결산 4. 사업비 집행결과 분석 및 모니터링 5. 기타 사업비 관리에 필요한 사항	③ 총괄책임자의 부재 시 실무책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 ④ 사업비 중앙관리 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. 1. 사업비 집행계획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수립 2. 사업비 집행의 통제 및 관리 3. 연차별 사업비 결산 4. 사업비 집행결과 분석 및 모니터링 5. 기타 사업비 관리에 필요한 사항
제8조(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) 사업단은 사업계획을 수립 및 변경 시 <u>사업추진위원회</u> 의 심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.	제8조(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) 사업단은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 <u>대학혁신운영위원회</u> 의 심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2-03-07>
제9조(사업결과보고서) 사업단은 사업 종료 후 사업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<u>사업추진위원회</u> 에 보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.	제9조(사업결과보고서) 사업단은 사업 종료 후 사업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<u>대학혁신운영위원회</u> 에 보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2-03-07>
제11조(사업운영 규정 변경) 이 사업 운영 및 관리 규정은 <u>사업추진위원회</u> 의 심의 및 총장의 승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.	제11조(사업운영 규정 변경) 이 사업 운영 및 관리 규정은 <u>대학혁신운영위원회</u> 의 심의 및 총장의 승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. <개정 2022-03-07>
<신 설>	제12조(구성원 참여) 이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<u>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학 전체의 사업 추진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운영한다.</u> <신설 2022-03-07>
제12조(기타) 이 사업 운영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과 본교의 규정에 따른다.	제13조(기타) 이 사업 운영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과 본교의 규정에 따른다. [기존 12조에서 13조로 이동]

개정문 (참고본)

원본(law.syu.ac.kr)에 개정문이 없어,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.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.

「대학혁신지원사업단 운영 및 관리 규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조직)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조직 설치 및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1. 대학혁신위원회
2. 대학혁신운영위원회
3. 대학혁신지원사업단
4. 자체평가소위원회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대학혁신위원회) ① 대학의 재정지원사업(중앙정부, 지자체) 운영의 총괄적 점검 및 자율혁신계획 상 특성화 방향에 기반한 투자 계획 수립에 대해 관리 감독 하는 기관으로 대학혁신위원회를 둔다.

② 대학혁신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며, 위원은 교무위원급 인사와 주요 재정지원사업 책임자 및 재학생(1인 이상)으로 구성한다.

③ 대학혁신위원회는 간사 1인과 필요에 따라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.

④ 대학혁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.

1. 재정지원사업(중앙정부, 지자체) 운영의 총괄적 점검에 관한 사항
2. 자율혁신계획 상 특성화 방향에 기반한 투자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
3. 대학 내 전체 재정지원사업 성과에 대한 총괄적 평가·환류 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
4. 대학 내 전체 재정지원사업의 투명성 ㉮ 공공성 강화를 위한 회계 모니터링 실시에 관한 사항
5. 대학 내 전체 재정지원사업의 운영 현황·성과에 대한 총괄적 평가에 관한 사항
6. 대학 내 전체 재정지원사업 간 자원 배분의 적절성 및 개선 계획 수립 ㉮ 운영에 관한 사항

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대학혁신운영위원회) ① 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학혁신운영위원회를 둔다.

② 대학혁신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며,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, 그 외 위원은 교무위원 급 인사와 외부전문가(1인), 재학생(1인 이상)으로 구성한다.

③ 대학혁신운영위원회에는 간사 1인과 필요에 따라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.

④ 대학혁신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.

1. 대학 발전계획과 연계한 자율혁신계획 수립 및 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
2. 사업 운영 관련 규정 ㉮ 세부집행지침 제정 및 개정 승인에 관한 사항
3. 사업비 배정 및 집행 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
4. 성과지표 설정 ㉮ 승인 및 관리에 관한 사항
5. 사업추진상황 및 결과의 점검 ㉮ 평가에 관한 사항
6.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

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조(대학혁신지원사업단) ① 사업실무를 총괄하는 사업전담조직인 대학혁신지원사업단(이하 “사업단”이라 한다)을 둔다.

② 사업단은 단장, 팀장, 팀원으로 구성하며, 별도의 전담교원 및 연구원을 둘 수 있다.

③ 사업단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학혁신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.

④ 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.

1. 사업 추진 계획 수립
2. 세부 사업별 운영 점검 및 상시 모니터링
3. 사업 결과보고서 작성
4. 핵심 및 자율 성과지표 등 성과(실적) 상시 모니터링 및 피드백
5. 사업성과 확산 및 홍보
6. 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

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조(자체평가소위원회) ① 사업 추진 점검 및 개선계획 수립을 위한 자체평가소위원회를 둔다.

② 자체평가소위원회는 내 ㉮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한다.

③ 자체평가소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정해진 기간에 정기적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

④ 이 외에 사업의 추가 점검이 필요할 때에는 대학혁신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자체평가소위원회에서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
⑤ 자체평가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.

1. 사업비 집행에 대한 정기 점검
2. 사업성과 및 자율성과지표 실적에 대한 정기 점검
3. 사업추진 결과에 대한 자체평가
4. 자체평가 결과에 따른 환류 및 개선계획 수립

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조(사업비 중앙관리 조직) ① 사업비 중앙관리 조직은 총괄책임자, 실무책임자 및 약간 명의 행정직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사업비 총괄책임자는 기획처장으로 하고, 실무책임자는 사업운영팀장을 당연직으로 하며, 실무자는 관련부서의 행정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.

③ 총괄책임자의 부재 시 실무책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④ 사업비 중앙관리 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.

1. 사업비 집행계획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수립

2. 사업비 집행의 통제 및 관리

3. 연차별 사업비 결산

4. 사업비 집행결과 분석 및 모니터링

5. 기타 사업비 관리에 필요한 사항

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8조(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) 사업단은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 대학혁신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9조 및 제11조 중 "사업추진위원회"를 각각 "대학혁신운영위원회"로 한다.

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(구성원 참여) 이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학 전체의 사업 추진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운영한다.

제12조를 제13조로 하고,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3조(기타) 이 사업 운영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과 본교의 규정에 따른다.

[기존 12조에서 13조로 이동]

부 칙

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